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56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참고사항 ····· 1

Ⅳ. 검토의견 ····· 2

1.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안 별표 2) ····· 2

Ⅰ.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언주의원 등 19인

나. 발 의 일 : 2025. 3. 28.

다. 회 부 일 : 2025. 3. 3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첨단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 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Ⅳ. 검토의견

1.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안 별표 2)

현 행	개정안
○ 별표 2 <신 설>	○ 별표 2 -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현행법 제5조[1]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금명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재 원	◦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 정부 및 한국수출입은행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용 도	◦ 해양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 및 기술이전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출산업협력 협상방안으로 수출업체 지원 사항 반영 ◦ 해양방위산업물자등을 생산하거나 해외진출한 첨단조선업자의 애로사항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 해양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을 위한 민간통상협력 및 산업협력 ◦ 해양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지원 ◦ 그 밖에 해양방위산업물자등 수출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관 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용・관리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첨단조선업지원특별법안”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는 첨단조선업자[2]가 국외

2)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6호의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기술이 적용된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마. 그 밖에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효율 및 안전・편의 향상 등에 관한 기술이 적용된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2. “첨단조선업”이란 첨단 선박을 건조・개조 또는 수리하는 업을 말한다.
3. “첨단조선업자”란 첨단조선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3]에 해당하는 선박 등(이하 “해양방위산업물자등”이라 함)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조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한 256억 3천만 달러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세계 조선 시장에서의 수주 점유율은 8년 만에 최저 수준인 17%로 전년보다 점유율이 3%p 하락하였음.

이와 같이 국내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와 시장 지배력 강화, 조선산업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응력과 정부 지원정책의 부족 등으로 향후 조선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높은 가성비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외 방위사업 분야 육성이 절실하다는 업계 요구가 있음.

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해양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 현지 여건이 기대만큼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일본과 유럽 등 동맹국들도 미 해군 함정 건조 시장을

---

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방위산업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일반업체

노리고 있는 만큼 국내 조선업계가 한발 앞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첨단조선업자가 국외에 해양방위산업물자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해양방위산업 분야의 수출금융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집중 지원을 통해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부 출연·융자금을 재원으로 해양방산물자 수출 지원 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기금 재원 대부분이 의존 재원으로 기금 목적과 연계된 안정적 재원이 없으며, 현재도 일반회계 등을 통해 해양방산물자 수출을 旣 지원 중에 있으므로 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므로, 과다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4]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

4)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개정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과 관련하여 동 기금의 재원 중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수출입은행의 자금 공급 업무의 목적으로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금과의 연관성은 있다고 보여지나, 재원 대부분이 의존 재원인 정부·한국수출입은행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등으로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이 크지 않으며, 안정적인 기금 재원 마련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와 시장 지배력 강화, 조선산업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응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부족 등으로 향후 조선산업의 경

---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것

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첨단조선업자가 국외에 해양방위산업물자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여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여 신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회계를 통해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 등 해양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관련 사업예산 현황(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액
일반회계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	8,200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1,300
	무역보험기금 출연	380,000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 2 <신 설>	별표 2 72.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문 의 처
02)6788-5152